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중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 (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 제3조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중별로 신설됨에 따라 제6조, 별표 2, 별표 3 일부개정
-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안 제12조, 안 별지 제2호서식)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증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안 별표 3, 안 별지 제12호서식)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한하여,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표 3 및 별지 제12호서식 일부개정
-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표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부개정에 따라 제2조, 제5조, 별표 2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872, 팩스 : 044-201-5587)